나. 기타암



통신 기기 제조 사업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외이도암

성별 여성

나이 35세

(직종) 통신 기기 제조 관련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 ○○○은 2004년 07월, 만 21세에 입사하여 통신 기기 제조 관련 업무에서 약 14년간 근무하였다. 2018년 06월경부터 좌측 귀에 이루 증상 이 있어 중이염 및 진주종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이상 소견으로 2018년 09월 10 일 대학병원 내원하여 외이도암으로 진단받았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후 경과관찰 중 2019년 03월 28일 사망하였다. 14년간 근무하며 야간작업 및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 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07월 2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 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화경

근로자는 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18년 9월까지 ㅁ사업장에서 통신 기기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제품의 기능 및 외관검사를 수행하 였고 제품 조립 업무도 수행하였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용한 물질은 이소프로필 알콜(IPA)와 에탄올이었으므로 상기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수준 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는 약 14년간 평균 65시간 정도의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 데. 7년 5개월간은 4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 6년 7개월은 2조 2교대 8시간으로 근무 하였다.

1. 암질환 나. 기타암 44 45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8년 6월경부터 시작된 좌측 이루를 증상으로 7월경 의원에 내원하여 진주종을 동반한 중이염으로 진료 받았다. 두통이 심해져서 2018년 8월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및 CT검사에서 외이도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해 타대학병원에 전원 되었고, 뇌경막 침범을 동반한 외이도 암 진단 하에 10월 16일 종양제거 및 유돌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 중 시행한 조직검사에 따라 외이도암으로 진단받았다. 수술 후 근로자는 청력소실 및 좌측안면마비가 발생하였다. 수술 이후로 약 7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 관찰 중 수행한 골스캔 촬영결과 좌측 두정엽에 암종이 침범된 소견이 발견되었고, 2018년 12월 28일 수행한 CT검사에서 재발소견과 함께 림프절 전이, 좌측 후두엽 및 경추 부위, 좌측 내경동맥으로의 침범이 관찰되었다. 완화치료를 위해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경과가 악화되어 2019년 3월 28일 사망하였다.

근로자는 어렸을 때에 좌측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외래 진료기록 및 수진 내역 상 반복적인 만성 비염과 부비동염으로 1년에 2-4번 주기적으로 이비인 후과에서 수진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2014년에 자궁내막증으로 복강경술을 받았으나 질환과 관련한 특이질환은 없었다. 병원 기록 및 유가족 면담에 의하면 근로자는 흡연은 하지 않았고 특이질환 등의 가족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35세가 되던 2018년에 외이도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18년 9월까지 약 14년간 □사업장에서 통신 기기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상병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오래 지속된 만성적인 화농성중이염의 선행이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유형의 암에서 두경부 암 치료의 목적의 방사선 조사가 관련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드문 질환으로 아직까지 직업적 요인으로는 알려진 것은 없다. 근로자는 약 14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소프로필알콜과 에탄올에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